

구독·독립(영구 이용권) 약관 안내

구독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주 물으시는 두 가지 — 구독은 어떻게 운영되고, 나중에 독립(영구 이용권)은 어떻게 되는지 — 를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추려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 끝의 조·항 번호가 약관 전문의 근거입니다.

구독

결제·요금 변경·추가 비용·환불, 그리고 구독 중 권리 관계.

결제와 해지

- 구독료는 등록하신 결제수단으로 매 결제 주기(월간 또는 연간)마다 자동 결제됩니다. 연간 상품은 갱신 결제 예정일과 금액을 30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제4조 ②
- 언제든 서비스 안의 구독 관리 메뉴에서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현재 결제 주기가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④

요금이 바뀔 때

- 소비자에 해당하시면 구독료 인상이나 무료→유료 전환은 적용 전 30일 이내에 시점·변경 전후 금액·결제 방법과 그 취소·해지 방법을 알리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종전 조건이 유지되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제4조 ③
- 유료 기능을 추가하거나 플랜을 바꾸면 기능 이름과 대가, 변경 전후 금액, 적용 시점을 화면에 먼저 표시하고 확인·동의하신 뒤에만 반영합니다. 추가한 기능을 해지하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그 대가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4조 ⑨⑩

이용 규모와 추가 비용

- 플랜은 요금제 안내 화면에 표시된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이용 규모가 기준을 넘거나 동시 접속이 크게 늘어 회사에 서버·전송 비용이 따로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면 사전에 알리고 추가 비용을 협의하며, 협의된 금액은 다음 결제 주기부터 적용됩니다. 동의 없이 사후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4조 ⑤⑥
- 협의를 통지 후 30일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회사는 다시 14일을 정해 알린 뒤 이용 규모를 플랜 기준값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다만 그 제한에도 서비스의 정상적 제공이 곤란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면 제공되지 않은 기간의 이용료를 일할로 환급합니다.

제4조 ⑦

- 플랜 밖의 기능 개발·맞춤 제작·외부 서비스 연동은 작업 범위와 대가를 먼저 제시하고 동의하신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원칙적으로 정기결제 금액에 반영합니다. 제4조 ⑧

청약철회와 환불

- 소비자에 해당하시면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서비스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 시작일)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은 필요 없고, 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한 사실을 미리 표시하고 시험 사용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이미 공급이 완료된 디지털콘텐츠 부분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아직 공급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①④⑤⑥
-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③
-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단순 변심으로 중도 해지하시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을 일할로 환급하며, 환급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 계약과 다른 이행, 서비스나 약관의 불리한 변경, 서비스 종료, 그 밖에 법령상 권리 행사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제5조 ⑦⑧
- 신청은 결제 내역의 [환불 요청] 버튼, 전자우편(contact@logosb.io), 고객센터 중 어디로든 되고, 환급은 최초 결제수단으로 합니다. 제5조 ⑨

구독 중 권리 관계

- 플랫폼·템플릿·소스코드·공통 모듈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고, 구독은 이용 기간 동안의 이용권입니다(소유권·지식재산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독이 끝나면 이용권도 끝나며, 영구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제9조 ①②
- 직접 등록하신 콘텐츠(상호·상품 정보·이미지·게시물·고객 데이터)와 사장님 명의의 도메인은 사장님의 것입니다. 회사는 호스팅·저장·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제9조 ⑥
- 개별 요청으로 만든 맞춤 개발물도 회사 귀속·이용 기간 사용이며, 영구 이용권의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만큼 영구 이용권 대가 산정의 「기능의 범위」에도 반영됩니다(권리 귀속을 달리 정하려면 별도 약정이 필요합니다). 제9조 ⑦

독립 — 영구 이용권(바이아웃)

구독을 멈춰도 사이트·앱을 계속 쓰고, 사업을 팔 때 그대로 넘길 수 있게 하는 장치.

영구 이용권이란

- 서비스로 만든 웹사이트·앱을 구독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양도는 아닙니다. 제9조의2 ①③
- 자기 사업을 위해 복제·수정·2차 저작·실행·호스팅·유지보수할 수 있고, 계열회사·수급인·호스팅 및 유지보수 업체·승계인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재허락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대상(사이트·앱) 또는 회사의 공통 플랫폼을 분리해 독립된 범용 서비스나 템플릿으로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재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대상 사업으로 자기 고객에게 상품·서비스·앱을 제공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조의2 ⑨⑩
- 별도 약정이 없으면 대상 범위는 대가 완납 당시의 최신 버전 전체이고, 이용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9조의2 ⑪
- 영구 이용권을 취득한 뒤 구독을 해지해도 영구 이용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장님 환경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①
- 이미 취득한 영구 이용권의 존속과 범위, 필수 인도물의 인도 의무, 임치물을 교부받을 권리는 어떤 개별 약정으로도 사장님께 불리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2조의2 ④

대가와 견적

- 대가는 산정 시점의 대상 범위 — 기능의 범위, 이용자 수와 이용 규모, 추가된 스킴·외부 서비스 연동 — 에 따라 정해집니다. 약관에 금액이 고정돼 있지 않으며, 회사가 범위와 견적을 먼저 제시하고 동의하신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제9조의2 ④
- 언제든지 그 시점 기준의 예상 대가를 물으실 수 있고,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산정 근거와 함께 안내합니다. 견적은 제시일부터 90일 유효하며, 이용 중 범위가 바뀌면 바뀐 범위로 다시 산정해 안내합니다. 제9조의2 ⑤
- 유효기간(제시일부터 90일) 안의 견적에 동의한다고 통지하고 대가를 완납하면 별도의 계약서 없이 영구 이용권이 성립합니다. 제9조의2 ②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거절 사유는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 — 다툼 없는 중대한 연체가 14일 최고 뒤에도 남은 경우, 공통 플랫폼을 범용 서비스로 재판매할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3자 라이선스 때문에 재허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구성요소(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절 불가), 법령·제재상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어느 쪽이든 14일 안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거절 사유가 없으면 회사는 같은 14일 안에 대상 범위·확정 견적·결제 방법을 서면으로 드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 수령을 미룰 수 없습니다. 재판매 목적을 이유로 한 거절은 사업의 계속 운영, 사업·지분의 인수, 합병·분할·영업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의2 ⑥

인도물과 기한

- 완납일부터 30일 안에(별도 약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필수 인도물을 인도합니다 — 소스코드와 최신 커밋·릴리스 정보, DB 스키마·데이터 사전·마이그레이션·콘텐츠 추출본, 빌드·배포 스크립트와 인프라·컨테이너·환경설정 명세, 의존성과 오픈소스·제3자 구성요소 목록, API 명세·관리자 권한 구조·운영 및 장애대응·백업 복구 문서, 외부 서비스 계정 이전 절차와 비밀번호 재발급 목록, 앱이 있으면 빌드 워크플로 사본. 제9조의2 ⑦
- 필수 인도물만으로 새 환경에서 빌드와 주요 기능 실행이 되는지 확인한 결과를 인도 때 함께 드립니다. 제9조의2 ⑧
- 오픈소스·제3자 구성요소의 목록과 주요 제약, 이전 가능 여부는 견적 제시 때와 이관 때 제공합니다. 제9조 ⑨
- 영구 이용권은 회사가 영구히 호스팅·유지보수·보안패치를 제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관 뒤 제3자 서비스 이용료와 라이선스 준수는 사장님 부담이며, 그 목록과 제약은 인도 전에 알립니다. 제9조의2 ⑫

이관 뒤의 책임과 안정화 기간

- 인도 시점 이후 사장님(또는 사장님이 선임한 업체)이 관리하는 환경의 운영·보안·백업 책임은 사장님께 있습니다. 제9조의4 ①
- 안정화 기간의 길이와 지원 범위는 별도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이 없으면 인도일부터 90일 동안 인도물 자체의 하자과 이관 절차에 관한 질의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제9조의4 ②
- 사장님 측 귀책이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차이로 생긴 장애·데이터 손실·성능 저하·연동 실패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 인도물 자체의 하자, 이관 절차상 의무 위반으로 생긴 부분은 제8조(책임 제한)에 따라 회사가 책임집니다. 제8조는 회사의 경과실에 배상 한도를 두지만, 필수 인도물 인도 의무와 임치 의무의 불이행, 고의·중과실에는 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의4 ③
- 이관본은 인도 시점의 상태이고, 그 뒤의 기능 추가·보안 패치를 이관본에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독을 유지하시는 동안에는 별도 약정을 맺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갱신된 소스코드 사본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4 ④

소스코드 임치

- 요청하시고 비용을 부담하시면 사장님을 수익자로 하는 임치 계약을 제3의 임치기관과 맺습니다. 요청 후 10영업일 안에 임치기관과 예상 실비를 안내하고, 비용 지급일부터 30일 안에 최초 임치를 마치고 수익자 확인서를 드립니다(임치기관 절차로 부득이하게 늦어지면 사유와 완료 예정일을 알려드립니다). 임치 비용은 임치기관에 실제로 내는 금액 기준이며 그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9조의3 ①③
- 임치물은 주요 릴리스마다, 최소 분기 1회 갱신합니다. 제9조의3 ②
- 회사의 파산·회생 신청(30일 안에 기각·취하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종료 통지, 해산·폐업, 중대한 유지보수의 30일 이상 중단, 인도·갱신 의무 불이행(15일 최고 뒤에도) 등이 생기면 임치기관에서 임치물을 교부받을 수 있고, 교부와 동시에 대상 사업의 운영·유지보수·수정·호스팅에 쓸 수 있는 영구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비독점 이용권이 생깁니다(수급인·승계인 재허락 포함, 범용 서비스 재판매·재제공 금지는 그대로 적용). 제9조의3 ④⑤

사업을 팔거나 넘길 때

- 주식·지분 이전으로 지배권이 바뀌는 것은 계약상 지위의 이전이 아니며 회사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완료 후 10영업일 안에 통지). 합병·분할도 법령에 따라 승계되고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제11조의2 ①②
- 영업양도로 진행 중인 구독 계약을 넘기실 때는 사전 통지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10영업일 안에 답하고,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거절 사유는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제11조의2 ③⑤⑥
- 이미 취득한 영구 이용권, 인도를 청구할 권리, 임치물을 교부받을 권리는 회사의 동의 없이 대상 사업과 함께 양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승계를 이유로 추가 대가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1조의2 ③④

구독이 끝난 뒤의 데이터 영구적이며 약관 전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전문이 다르게 읽히는 경우 전문이 우선합니다.

- 계약 종료일부터 90일 동안 횟수 제한 없이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제공합니다 — 상품·회원·주문·게시물은 CSV 또는 JSON, 업로드한 이미지·파일은 원본 형식, 사이트 콘텐츠와 설정값, 도메인·외부 서비스 연결 정보(비밀키 제외). 제11조 ②
- 90일이 지나면 회사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분리 보관 뒤 파기하고, 백업에는 최대 30일 동안 잔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②③④

부록 — 인용한 조문 전문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이전 시행일: 2026년 8월 27일) · 전문은

<https://1teamai.com/terms.html>

제2조의2 (약관과 개별 약정의 관계)

-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본 약관과 다른 내용의 개별 약정(주문서, 견적서, 영구 이용권 약정, 임치 약정,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등)이 있는 경우, 그 개별 약정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②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이용자의 권리는 어떠한 개별 약정으로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 ③ 개별 약정이 본 약관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의무 또는 회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내용은 이용자와 실질적으로 개별 교섭되었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회사가 마련한 양식에 서명하거나 미리 마련된 항목을 선택한 사실만으로는 개별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권리는 어떠한 개별 약정으로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이미 취득한 영구 이용권의 존속 및 그 범위
 2. 필수 인도물의 인도 의무
 3. 제9조의3에 따른 임치물의 교부를 받을 권리 및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이용권
- ⑤ 개별 약정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미리 마련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으로 보아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4조 (유료 서비스 및 정기결제)

-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구독 플랜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정기결제 상품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매 결제 주기(월간 또는 연간)마다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연간 상품의 경우 회사는 갱신 결제 예정일과 결제 예정 금액을 그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 소비자인 이용자에 대한 정기결제 금액의 증액 또는 무료 제공에서 유료 정기결제로의 전환은, 적용 전 30일 이내에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경 전후의 가격 및 결제 방법을 고지하여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그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함께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조건을 유지하거나 위약금 없이 이용계약을 종료합니다.
- ④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구독 관리 메뉴에서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현재 결제 주기 종료 시점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시 해지 및 잔여 기간 환불은 제5조에 따릅니다.
- ⑤ 유료 구독 플랜은 요금제 안내 화면에 표시된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회사는 측정 지표와 그 산출 근거 및 플랜별 기준값을 요금제 안내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 ⑥ 이용 규모가 플랜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또는 동시 접속이 크게 증가하여 회사에 서버·전송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추가 비용을 협의하며, 협의된 금액은 다음 결제 주기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후에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⑦ 제6항의 협의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다시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한 후 이용 규모를 해당 플랜의 기준값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용계약은 유지되며, 제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정상적 제공이 곤란한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 ⑧ 구독 플랜에 포함된 범위를 벗어나는 기능 개발, 맞춤 제작, 외부 서비스 연동 등 이용자의 개별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전에 작업 범위와 대가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는 정기결제 금액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제9항에 따릅니다. 이용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기결제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후에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⑨ 이용자가 AX 기능 등 유료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용 중인 플랜을 변경하는 경우, 그에 따라 월 구독료 등 정기결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능의 추가 또는 플랜의 변경 전에 다음 각 호를 화면에 표시하며,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추가되는 기능의 명칭과 그 대가
 2.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정기결제 금액

3. 변경된 금액이 적용되는 시점

⑩ 이용자가 제9항에 따라 추가한 기능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기능의 대가는 다음 결제 주기부터 청구되지 아니하며 정기결제 금액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제5조 (청약철회 및 환불)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은 날보다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②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사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사의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는 이미 공급이 완료된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직 공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청약철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에는 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회사가 이 기간을 지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그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⑦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이용자가 단순한 변심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결제된 이용료 중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며, 이 경우 환급 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의 귀책사유,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 서비스 또는 약관의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서비스의 종료,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⑨ 청약철회 및 해지는 서비스 내 결제 내역의 [환불 요청] 버튼, 전자우편(contact@logosb.io)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은 최초 결제수단으로 합니다. 최초 결제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⑩ 이용자가 소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적용됩니다.

제8조 (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하는 클라우드·결제대행·앱마켓 등 제3자 서비스의 중단 또는 정책 변경 등 회사가 지배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합리적인 공급자의 선정과 감독, 장애의 예방 및 피해의 경감을 위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회사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정확성·적합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이용자는 결과물을 자신의 책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AI 결과물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불확실성에 관한 것으로서, 회사가 명시적으로 보증한 사양, 회사가 표시·광고한 성능, 회사가 검수하여 확정된 결과 및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의 총액은, 손해가 발생한 사고 발생일 직전 12개월 동안 해당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이용료의 합계액과 금 50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 항의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손해가 특별손해·간접손해 또는 일실이익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조의4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회사가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가한 손해
3.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의 비밀정보의 침해로 인한 손해
4. 회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인한 손해
5.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환급 및 과오금의 반환
6. 제9조의2에 따른 필수 인도물의 인도 의무 및 제9조의3에 따른 임치 의무의 불이행

제9조 (지식재산권 및 이용권)

- ① 회사가 서비스 제공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개발한 플랫폼, 공통 모듈, 템플릿,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인프라, 디자인 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이용 기간(구독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서비스와 생성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받을 뿐, 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양수하지 않습니다. 구독이 종료되면 이용권도 함께 종료됩니다. 다만 제9조의2에 따른 영구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각 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한 기존 자료와 자신의 인간적·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에 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 ④ AI가 생성한 디자인·문안·이미지 등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법령상 권리가 성립하고 그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는 범위에서 회사에 귀속하며, 이용자는 이용 기간 동안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9조의2에 따른 영구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영구 이용권의 대상 범위에 포함된 산출물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은 회사가 법령상 성립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보유함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 ⑥ 이용자 콘텐츠와 이용자 명의의 도메인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호스팅·저장·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취급합니다.
- ⑦ 이용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제작된 맞춤 개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하며, 이용자는 제2항과 같이 이용 기간 동안 이를 자신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 개발물은 제9조의2에 따른 영구 이용권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며, 그 대가를 산정할 때 제9조의2 제4항의 「기능의 범위」에 반영됩니다. 권리의 귀속과 이용 범위를 이와 달리 정하려면 개별 약정에서 정합니다.
- ⑧ 회사는 자신의 임직원 및 수급인으로부터 생성물의 제공과 본 약관에 따른 이용권의 부여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였으며, 제9항에 따라 고지된 제3자 구성요소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 ⑨ 생성물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제3자 구성요소는 각 라이선스에 따르며, 회사는 영구 이용권의 견적을 제시할 때와 이관을 할 때에 그 목록과 주요 제약 및 이전 가능 여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9조의2 (영구 이용권)

- ① 이용자는 자신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로 생성된 웹사이트·앱을 구독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권(이하 "영구 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 영구 이용권은 이용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회사가 제시한 유효한 견적에 동의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대가를 완납한 때에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성립합니다. 회사는 별도 약정의 미체결이나 추가 조건의 불수락을 이유로 그 성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③ 영구 이용권은 지식재산권의 양도가 아니며, 제9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④ 영구 이용권의 대가는 산정 시점의 대상 웹사이트·앱의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때 범위란 기능의 범위, 이용자 수 및 이용 규모, 추가된 스킴·외부 서비스 연동 등 대상의 구성과 규모를 결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회사는 사전에 그 범위와 견적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합니다.
- ⑤ 회사가 제시한 견적은 제시일부터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이용 기간 중 제4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범위를 기준으로 대가를 다시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예상 대가의 안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산정 근거와 함께 안내합니다.
- ⑥ 회사는 이용자가 영구 이용권의 취득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한하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통지합니다.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는 같은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대상 범위, 확정 견적 및 결제 방법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없거나 확정된 중대한 연체 채무가 있고, 14일 이상의 최고에도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가 회사의 공통 플랫폼을 분리하여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용 서비스로 재판매할 목적으로 요청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다만 대상 사업의 계속 운영, 이용자의 사업 또는 지분의 인수, 합병·분할·영업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대상에 회사가 제3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재라이선스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구성요소를 특정하고 대체 방안을 함께 안내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영구 이용권의 성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관계 법령 또는 제재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⑦ 영구 이용권의 대가가 완납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대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약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필수 인도물")를 인도합니다. 별도의 약정에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1. 대상의 소스코드 및 최신 커밋·릴리스 정보
 2.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데이터 사전, 마이그레이션 및 이용자 콘텐츠의 추출본
 3. 빌드·배포에 필요한 스크립트, 인프라 구성 정의, 컨테이너 정의 및 환경설정 명세
 4. 의존성 목록 및 제9조 제9항에 따른 오픈소스·제3자 구성요소 목록

- 5. API 명세, 관리자 권한 구조 및 운영·장애대응·백업 복구 문서
 - 6. 도메인·DNS·클라우드·앱마켓 등 외부 서비스 계정의 이전 절차와, 인증서·비밀키의 재발급 및 교체 목록
 - 7. 앱이 있는 경우 그 빌드에 필요한 워크플로 정의 사본
- ⑧ 회사는 제7항의 필수 인도물만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대상의 빌드와 주요 기능의 실행이 가능함을 확인한 결과를 인도 시 함께 제공합니다.
- ⑨ 영구 이용권에는 대상을 이용자의 사업을 위하여 복제·수정·2차적 저작물의 작성·실행·호스팅·유지보수할 권리가 포함되며, 이용자는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인, 호스팅 및 유지보수 사업자와 승계인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재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대상 사업을 통하여 자신의 고객에게 상품·서비스 또는 앱을 제공하는 행위와 대상 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제10항의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⑩ 이용자는 대상 또는 회사의 공통 플랫폼을 분리하여 이를 독립된 범용 서비스나 템플릿으로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재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⑪ 영구 이용권의 대상 범위는 별도의 약정에서 특정합니다. 별도의 약정에서 이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가 완납 당시의 최신 버전 전체, 이용자와 그 지배·피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및 승계인, 이용 규모의 제한 없는 실제 사업상의 이용을 기본 범위로 합니다.
- ⑫ 영구 이용권은 회사의 영구적인 호스팅·유지보수·보안패치 제공 의무를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이관 이후 제3자 서비스의 이용료와 제3자 라이선스의 준수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그 목록과 제약을 인도 전에 고지합니다.

제9조의3 (소스코드 임치)

- ① 이용자가 요청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는 임치 계약을 제3의 임치기관과 체결하고 최초 임치를 완료합니다.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임치기관과 예상 실비를 안내하고, 이용자가 그 비용을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치 계약의 체결과 최초 임치를 완료하며, 임치기관이 발급한 수익자 확인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임치기관의 절차로 부득이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완료 예정일을 통지합니다.
- ② 임치물에는 대상을 빌드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제9조의2 제7항 각 호에 준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대상의 주요 릴리스가 있을 때마다, 최소한 분기에 1회 임치물을 갱신합니다.
- ③ 임치에 드는 비용은 임치기관에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임치기관으로부터 임치물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1. 회사에 대하여 파산 또는 회생 절차의 개시가 신청되고 30일 이내에 기각되거나 취하되지 아니한 경우
 - 2. 회사가 제6조의2에 따라 서비스의 종료를 통지한 경우
 - 3. 회사가 해산하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
 - 4. 회사가 대상에 관한 중대한 유지보수를 30일 이상 중단한 경우
 - 5. 회사가 제9조의2 제7항에 따른 인도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치물의 갱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5일 이상의 최고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임치 약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임치물이 교부된 경우, 이용자에게는 교부된 임치물을 대상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유지보수·수정 및 호스팅에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비독점적 이용권이 그 교부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이용권에는 이용자의 수급인 및 승계인에 대한 재허락의 권한이 포함되며, 제9조의2 제10항의 금지는 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⑥ 임치의 대상·주기 및 교부 절차의 세부 사항은 별도의 약정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제9조의4 (독립 이관 및 안정화 기간)

- ① 이관이 이루어진 경우, 인도 또는 교부 시점 이후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선임한 제3자가 관리하는 환경의 운영·보안·백업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이관된 시스템은 이관 직후 일정 기간(이하 "안정화 기간") 동안 서버 환경의 차이, 외부 서비스의 재연결, 설정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오류 또는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정화 기간의 길이와 그 기간 중 회사가 제공하는 지원의 범위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하며, 별도의 약정에서 이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수 인도물의 인도일 또는 임치물의 교부일 중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동안 회사는 인도물 자체의 하자과 이관 절차에 관한 이용자의 질의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선임한 제3자의 귀책사유나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 데이터의 손실, 성능의 저하, 제3자 서비스와의 연동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인도되거나 교부된 자료 자체의 하자, 이관 절차상 의무의 위반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의무의 위반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이관되는 자료는 인도 또는 교부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회사는 그 이후의 기능 추가·개선 및 보안 패치를 이관본에 반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구독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갱신된 소스코드 사본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 종료 후의 처리)

- ① 구독 해지, 이용 기간 만료 등으로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가 제공하던 호스팅·운영은 중단됩니다. 이용자가 제9조의2에 따른 영구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영구 이용권은 이용계약의 종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환경에서 대상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계약 종료일부터 90일 동안 자신의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반출 대상과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반출은 횟수의 제한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상품·회원·주문·게시물 등 구조화된 데이터: CSV 또는 JSON
 2.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파일: 원본 형식
 3. 사이트 콘텐츠 및 설정값: 텍스트 또는 구조화된 형식
 4. 이용자 명의의 도메인 및 이용자가 계약한 외부 서비스의 연결 정보(비밀키를 제외한 재설정에 필요한 정보)
- ③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분리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 ④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백업을 보관하며, 백업은 개별 이용자 단위로 분리하여 삭제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삭제 이후에도 백업 보관 기간(최대 30일) 동안 백업 내에 데이터가 잔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백업의 순환에 따라 삭제됩니다. 백업은 운영 환경과 분리하여 접근이 차단된 상태로 보관하고,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백업 내의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장애 복구를 위하여 전체 백업을 복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파기 대상이 된 데이터를 운영에 사용하기 전에 다시 삭제합니다.

제11조의2 (지배권의 변경 및 계약상 지위의 승계)

- ① 이용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이전 등에 따른 지배권 변경은 계약상 지위의 이전으로 보지 아니하며,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는 지배권 변경이 완료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합니다.
- ②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부속계약상의 지위는 관계 법령과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되며,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는 사전 통지가 가능한 경우 미리,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승계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합니다.
- ③ 이용자가 영업의 양도로 진행 중인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에 사전 통지하고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취득한 영구 이용권, 그에 따른 인도청구권 및 제9조의3에 따른 임치물의 교부를 받을 권리는 대상 사업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임치 수익자의 변경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승계에는 본 약관에 따른 지위뿐만 아니라 이관 지원 및 유지보수에 관한 약정 등 관련 부속계약상의 지위가 포함되며, 이들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승계됩니다. 회사는 승계를 이유로 추가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⑤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승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통지합니다. 회사가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⑥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동의를 거부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한하며, 회사는 거부 시 그 구체적 사유를 명시합니다.
1. 양수인이 회사의 공통 플랫폼을 분리하여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용 서비스로 재판매할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다만 대상 사업의 계속 운영을 위한 인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양수인이 이용자의 미지급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양수인이 관계 법령 또는 제재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자인 경우
- ⑦ 승계 또는 지배권 변경에 수반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이용자와 양수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